국지도57호선 식생보강토옹벽 재해복구사업

사 업 계 획 서

2026 . 9

광 주 시

목 차

1. 설 계 설 명 서
2. 일 반 시 방 서
3. 특 별 시 방 서
4. 예 정 공 정 표

1. 설 계 설 명 서

Ⅰ. 설 계 설 명 서

1. 공사목적

본 과업은 재해 피해를 입은 국지도57호선 보강토 옹벽에 대한 실시설계를 통해 복구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공사위치

경기도 광주시 문형동 630-3번지 일원

3. 공사개요

1) 토　　공 : 1식

2) 법면보호공 : PC패널옹벽 설치(2단, H=7.5m): L=48.75m

3) 법면배수공 : 플륨관 설치(400x400): L=38.0m, 측구수로관 재설치(300x300): L=16.0m,
집수정 설치:9EA, PE이중벽관 설치: L=69.0m

4) 포 장 공 : 콘크리트 포장(T=400mm): A=57.0㎡, 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(T=50mm): A=1,065.0㎡

5) 부 대 공 : 1식

4. 공사기간

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.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자와 협의하여 연장 조정할 수 있다.

1) 공사기간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평균강우일수보다 많을 때
2)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
3)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
4)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지역으로 시공이 불가능할 때

5. 공사용장비

도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될 다음 장비를 공사의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입 사용하여야 하며 반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일체 현장외로 반출 할 수 없다.

6. 설계변경조건

본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.

1)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하였을 시 변경할 수 있다.
2) 자재의 규격, 수량 및 인도지를 변경할 수 있다.
3) 골재원 및 토취장이 변경되었을시
4) 기초공의 지반 지질이 실지와 상이할 때 변경할 수 있다.
5) 선형 및 구조물 포장 등의 위치 수량공법이 변경되었을 때
6) 진입로 시공 및 진입로의 통행시설이 변경되었을 때
7)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7. 공사의 설계적용 기준

1) 환　　율 : 2026년 1월 6일 고시 $: 1,442.0원 적용
2) 자 재 시 세 : 2026년 조달청 가격 및 2026년 9월호 물가자료 정보지에서 의거 산출
3) 노임 및 품셈 : 2026년 하반기 정부노임 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

2. 일 반 시 방 서

II. 일 반 시 방 서

1. 적용도서

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.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: 건설부
.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: 건설부
. 하천시설기준 : 건설부
.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: 건설부
. 무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: 건설부
.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: 건설부
. 건설공사 관계령 및 규정 : 대한민국
. 한국공업규격(KS) : 상공부 표준국

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있을시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2. 시공도면

.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.
.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 이전에 공사 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
. 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시공 도면의 제출한다.
. 도급자는 토공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취장의 지형도를 작성하여 토공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.

3. 현장조사

. 도급자는 현장조사를 위해 공사감독의 요청에 따라 공사감독이 요구하는 깊이, 넓이, 길이만큼 시험구멍을 파고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4. 시공측량

가. 일반

. 도급자는 특별시방서 혹은 공사감독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, 위치, 크기 및 선형의 시공측량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.

. 공사시공 도중에 위치, 표고, 크기 및 선형에 잘못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잘못을 도급자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한다.

. 시공측량 결과에 대한 공사감독의 검사가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시공측량에 사용된 수준점, 표석등에 도급자의 보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.

나. 시공측량비

.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.

다. 측량표의 설치

. 시공기준점은 국가기준점을(삼각점, 수준점) 이용하여야 하며, 도급자는 당해 공사시행에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, 표고를 공사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.

.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.

.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.

.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

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.

라. 측량요원

.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숙련된 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며,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.

5. 안전사고 예방

.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험 및 도급자재, 지급자재 및 정비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 계약기간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후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.
.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시행청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.
. 도급자는 이계약중에 일어나는 작업장 인명손실, 직업병등 인명피해 및 도급자재, 지급자재 및 장비등 재산성의 피해를 정확히 기록 보존 하여야 하고, 그 기록을 공사감독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.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.
. 화약류 사용은 관계 법규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취급케하고 보안시설 및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.
.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응급처리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.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의료약품 제조사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.

6. 공사의 일시 중지

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,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.

.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
.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
.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.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
.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

7. 보고

.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과를 조사하여 공정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,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
8. 계출 및 제출사항

.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.
. 착공계, 예정공정표, 현장대리인계, 안전관리인 선임계등을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감독관청에 제출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에게 제출한다.

9. 사급자재

. 사급자재중 주요 자재는 공사감독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.
. 사급자재는 반드시 K.S제품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10. 도급자의 의무

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임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.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,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.
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.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.
.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.
.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재시공하여야 한다.

.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.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. 본 공사 시공지구 내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.

11. 준공검사

. 도급자는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.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.
.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.

12. 공사후의 정리

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,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